

의안번호	제686호
의 결 연 월 일	2024년 9월 11일 (제420회)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연월일	2024년 9월 2일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686
----------	-----

제안연월일 : 2024년 9월 2일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자문위원을 3명을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자문위원의 전문분야에 맞는 자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자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외적으로 위원회의 자문위원을 3명을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안 제2조제5항)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규칙안예고 : 해당없음
- 관련부서 협의 : 위원회 의견 조회 완료
-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자문위원의 위촉) ①~④(생략)

⑤ 조례 제43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분야 자문이 필요하여 기존에 위촉된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
2. 쟁점이 있는 안건 심사 등을 위해 다수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자문위원의 위촉) ①~④(생략) <신 설>	제2조(자문위원의 위촉) ①~④(생략) ⑤ 조례 제43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분야 자문이 필요하여 기존에 위촉된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 2. 쟁점이 있는 안건 심사 등을 위해 다수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공직선거법」 제 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2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